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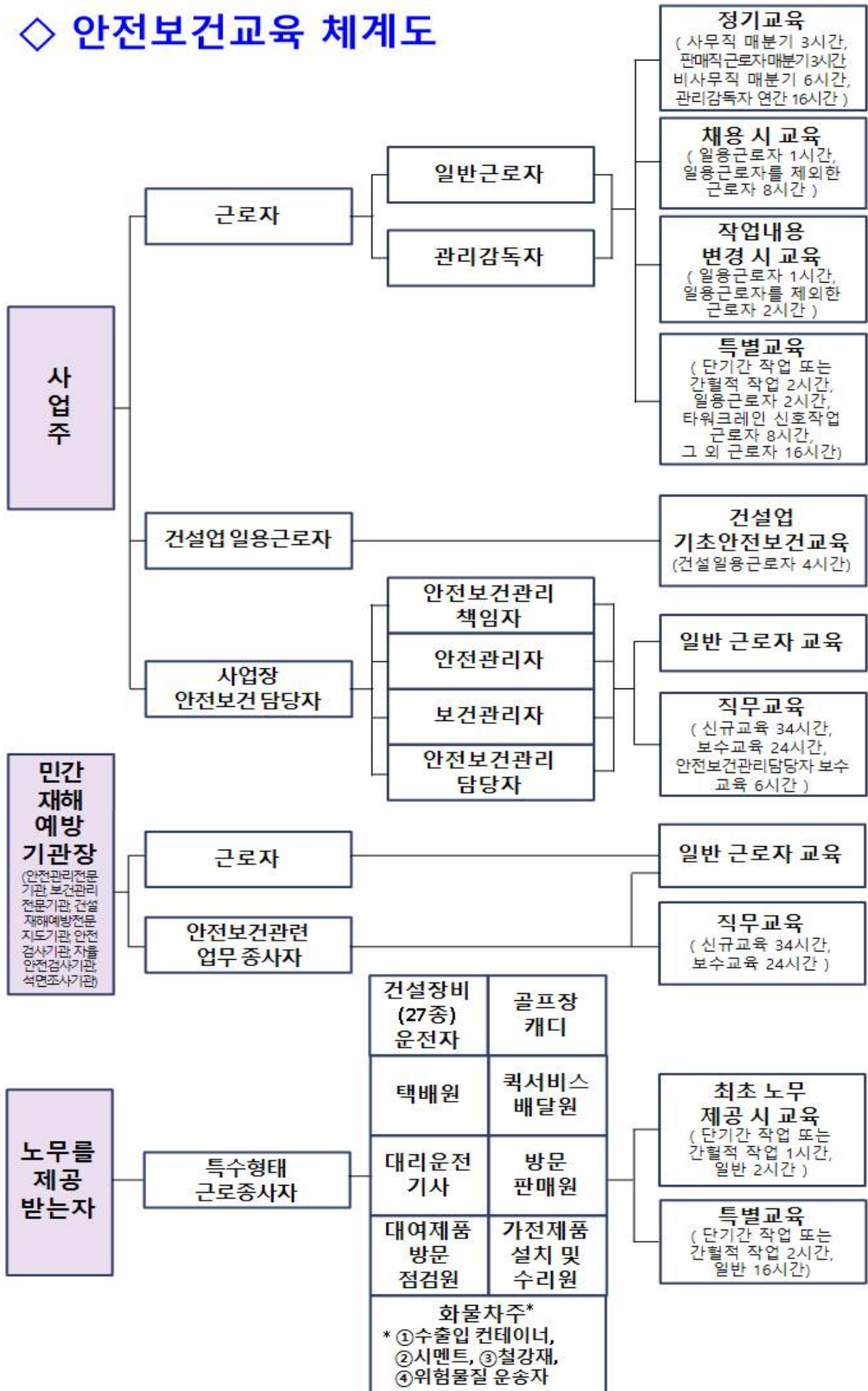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2. 9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판매직근로자매분기3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근로자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근로자 8시간, 그 외 근로자 16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일반 근로자 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6시간)

일반 근로자 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1시간, 일반 2시간)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일반 16시간)

건설장비 (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자	

참고 1

법령으로 이해하는 교육 제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29조제①②③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①	-
2	교육횟수 및 시간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 산안법 제29조제④	-	-	■ 제3조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 제3조의2제① ■ 제6조 ■ [별표1]
5	교육내용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 산안법 제33조①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① ■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제3조의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산안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운전자 등 9개 직종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77조제②	■ 산안법 시행령 제68조	-	-	
2	교육횟수 및 시간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	-	■ 제3조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 제3조의2제① ■ 제6조 ■ [별표1]
5	교육내용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	-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
1	교육대상	■ 산안법 제32조제①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제①②③	■ 제14조
2	교육횟수 및 시간	■ 산안법 제32조제②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3	교육방법	■ 산안법 제32조제①	-	-	-
4	교육강사	-	-	-	-
5	교육내용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제15조
6	교육기관	■ 산안법 제33조①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③ ■ 산안법 시행령 [별표12]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제19조의2~3

법정교육

I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 나. 정기교육
 - 다. 채용시 교육
 - 라.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마. 특별교육
 -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 직무교육
 - 가. 신규교육
 - 나. 보수교육
 - 다. 전문화교육
 - 라. 직무교육의 면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상)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5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
 -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①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 작업인 경우와 ②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1이나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

교육방법	준수 사항
현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
인터넷 원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교육(모바일교육) 시 다음 항목을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
우편통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강사)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⑥ 산업보건의
-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 규정 [별표1]

-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교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함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교육제외)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함</p>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p>※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음</p> <p>※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p>※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p>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p>※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p>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 ◇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본 안내서 **45페이지(수정필요)**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교육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다만,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 ◇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개정>

구분	기준
가. 전산시스템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 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나. 교육내용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2) 적절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3)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할 것
다. 교육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개,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
라. 교육평가 관리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는 ①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②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평가 ③학습진도율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평가를 위한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이를 안내할 것 7) 베낀 답안 방지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p><인터넷 원격교육></p> <p>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p> <p>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p> <p>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를 검사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우편통신교육></p> <p>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p> <p>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2.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신설>

구분	기준
가. 플랫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2)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3)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나. 과정 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3)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다. 정보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2)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라. 수강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마. 출석·수강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2)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3)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바. 질의 및 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나. 정기교육

교육 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정기 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1.5시간	1.5시간	0.75시간
	③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 ▶ 매분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21.5.18. ~ '21.8.17)

▶ 매년: 만 1년을 말함 (예시: 2016.5.18. ~ 2017.5.17.)

** ▶ 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개요)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은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음
- (교육방법) 집체교육 시 교육의 효과가 높은 토의·토론·세미나,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 및 나목

교육대상	교육내용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정기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사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 근무장소 독립 여부, 업무 또는 직종이 사무직인지 여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본 안내서 p.202 참고)
- ◇ 전년도 하반기에 개업하여 재해가 없는 사업장도 무재해 사업장인지
 - 무재해 사업장 교육 감면제도 취지에 맞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함
-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 ◇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함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매분기 0.75, 1.5, 3,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간 4, 8,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란?

-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 ①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 ②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 ③ 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 ④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 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일반검진 및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기타직 구분

①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②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2015.9.24.))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전문서비스 관리직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행정.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금융 및 보험 사무직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비사무직 (기타직)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 매장 판매직 -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 임업 숙련직 -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 군인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사무직/비사무직)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시에는 근로자의 직종 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다. 채용시 교육

교육 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채용 시	1시간	0.5시간	0.5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개요)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참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 6. 3)
-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민원질의요지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는지

□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 11. 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 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라.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 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1시간

-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마. 특별교육

※ 특별교육은 아래 4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됨에 유의

- ❖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가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기준)
 -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②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 ③ 국제 및 외국기관
 -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최저 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8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개요) 사업주(산안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시)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작업명	교육내용
<p><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p><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 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작업명	교육내용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p>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p> <p>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p> <p>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6.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요약표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정기교육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교육실시 시간	고시 제9조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들에게 이수하도록 할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분기(관리감독자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실시 시간	고시 제9조②
	사업주 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고시 제9조④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실시 시간	고시 제9조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사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인정	강의 시간	고시 제9조⑧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	현장강평 시간	고시 제9조⑬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참여 시간	규칙 제27조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제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삭제
-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⑤⑥ 생략
-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 ⑧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⑨ 삭제
-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⑪~⑫ 삭제
-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확인방법)**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언제 적용되는 조항인지
 - (취지)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사업장 및 작업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답변) 도급인-수급인-근로자 등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사업장의 변경이 없다면 채용시교육과 특별교육이 면제되는 것임

-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
- **(내용)**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 * ①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②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③안전검사기관, ④자율안전검사기관, ⑤석면조사기관
- **(방법)**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수강통지 및 등록)

-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
- ②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 해야함
- ③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 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함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 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

가. 신규교육

□ (교육시기)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p>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보수교육

□ (교육시기)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전문화교육

- (목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종 또는 전문분야 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내용) 교육과정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분야별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대상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안전검사원
- (수강신청 및 등록)
 - ①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
 -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교육 희망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 ③ 전문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직무교육에 준하여 실시한다.
- (교재)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화교육 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후관리)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①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 ②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 시 반영
 - ③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라. 직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4쪽) 대상

- **(내용)**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4시간 이상

교육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유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 **(방법)**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1이나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실시간교육 형태로 하여야 함.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 ②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방법)**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내용)** 사업주는 종사자등에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5에 따른 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 ① 종사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교육과정	교육내용
최초 노무 제공 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같음(안내서 13쪽 참고)

- (강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강사를 선임할 때는 영 별표10 제2호와 고시 별표1 제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함,

※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①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1항 [별표 4]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간 정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2조제7항 및 제8항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

* 6개월 이상이 자격취득 기준 94.4%, 경력관리 기준 96.1%

②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사고예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밑줄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육)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 가능(시행규칙 제95조제3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 가능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계(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중
-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① 교육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기 작업**,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 등
 -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①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②지게차 5대 이상 작업, ③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이 해당
 - ※ 하역기계(지게차 등) 5대 이상 작업 건설현장은 대형현장이 해당되나 하청업체에서도 소유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대상현장은 극히 미미
 -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은 운전자가 근로자로서 종전법에서도 특별교육 적용대상

②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다만,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특별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16시간	채용시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분할 실시 가능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하고,
 - 교육대상 건설기계도 주로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에 불과하며,
 - 최대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작업투입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가 가능하여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③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공통사항 및 당해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시 안전 관리 사항으로 분류(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가능
 - 인터넷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β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에서는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원격교육) 인정 가능

가. 연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6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안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등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
- (교육시간) 업무교육 시간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교육 구분		교육기간	비고
계		3개월 이상 (13주)	
업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원)	기초과정	1주	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과정
	전문화과정	8주	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과정
실무수습(지도사협회)		4주	지도사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수습

나. 보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5조에 따라 갱신등록하려는 지도사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가 갱신등록하려면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육시간)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지도실적이 2년 미만은 20시간 이상, 2년~3년 미만은 10시간 이상

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법적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혜택)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 (교육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교육내용) ①안전의식 제고, ②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③사업장 위험성평가, ④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등
- (교육시간/방법) 4시간 이상(교육내용별 각 1시간 이상) / 집체교육

나. 위험성평가 교육

- (법적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교육과정) ①사업주 교육, ②평가담당자 교육, ③전문가 양성 교육
-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원

